

시보

선 람	기관의 장

all ways INCHEON

제1756호

2019년 7월 8일 월요일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조 례

- 인천광역시조례 제619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
- 인천광역시조례 제619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

규 칙

-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41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7

훈 령

- 인천광역시훈령 제1195호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8
- 인천광역시의회훈령 제64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 45

고 시
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48호 「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」 수시조정 고시 47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1호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 고시 49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50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3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55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4호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56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5호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00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3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03
-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9-189호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현황 고시 110

공 고
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52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113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64호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15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66호 공인 등록 공고 120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67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122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6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123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7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124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27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공고 13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154호

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을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(시설계획과, 032-440-4673)와 계양구 공영개발사업단(032-450-5712)에 갖추어 두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. 7. 8.

인천광역시장

❖ 주요 변경 내용

-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산업단지 면적 변경
-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변경
 - 「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」 반영
- 공공공지 및 하천, 빗물펌프장(1개소) 폐지 및 가스공급설비 신설
- 공원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확보 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
- 지구단위계획 변경
 - 획지계획 수립(신설)
 - 건축물 용도·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
- 실시계획 변경
 - 산업단지 경계 배수로, 우수관로, 상수관로 노선 변경(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시공)
- 공영주차장(1개소) 무상귀속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(변경)

- 명 칭: 서운일반산업단지
- 위 치: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
- 면 적 (변경)
 - 기 정: 523,035㎡
 - 변 경: 524,970㎡ [증) 1,935㎡]

2.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(변경 없음)

- 계양구 및 인천시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
-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
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(변경 없음)

- 사업시행자: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(주) 대표이사 김 영 태
- 주 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 경원빌딩 6층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(변경 없음)

- 개발기간: 2014년 ~ 2019년
- 개발방법: 민·관 공동개발

5. 총 사업비 (변경 없음)

- 사업비: 3,602억원

6.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(변경)

가. 주요 유치업종 (변경없음)

구 분		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9) 중분류
제조업 (C)	철강·기계산업	C25. 금속가공제조업
		C29.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	전자·전자산업	C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
		C28. 전기장비 제조업
	자동차·운송산업	C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		C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기타산업	C33. 기타제품제조업	

나. 유치업종 배치계획 (변경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314,455	증) 45.2	314,500.2	100.0	
일 반 제 조 업	소 계	262,062	증) 53.2	262,115.2	83.3	
	C25. 금속가공제조업	76,117	증) 10.3	76,127.3	24.2	
	C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	28,078	감) 4.1	28,073.9	8.9	
	C28. 전기장비 제조업	30,014	증) 8.3	30,022.3	9.5	
	C29.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79,291	증) 3.7	79,294.7	25.2	
	C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4,650	감) 3.9	34,646.1	11.0	
	C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4,950	증) 8.0	4,958.0	1.6	
	C33. 기타제품제조업	8,962	증) 30.9	8,992.9	2.9	
	지식산업센터 ¹⁾	9,600	감) 0.8	9,599.2	3.1	
복합업종(중소기업전용단지) ²⁾		42,793	감) 7.2	42,785.8	13.6	

주) 1. 제시된 7개 업종, 복합업종의 제조업과 관련업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,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)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

2. 제시된 7개 업종, (C10)식료품 제조업, (C16)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가구제외, (C17)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(C18)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(C23)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(C24)1차 금속 제조업 (E38)폐기물 수집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

※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불가
 -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

다. 입주 제한업종 (변경)

중분류	입주 제한업종	비고
C10 (식료품 제조업)	도축업(10110),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(10800),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21)	중소기업 전용 단지
C16 (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)	목재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(16103)	
C23 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	시멘트 제조업(23311),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(23321), 레미콘 제조업(23322), 콘크리트타일·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(23325),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(23326), 그외 기타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(23329), 이스콘 제조업(23991),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999)	

※ 입주 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
 -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(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)
 - 「약취방지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‘지정약취물질’

다. 입주 제한업종 (변경없음)

중분류	입주 제한업종	비고
C24 (1차 금속 제조업)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(24191), 동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1), 알루미늄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2), 연 및 아연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3), 기타 비철금속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9), 동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1), 알루미늄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2), 기타 비철금속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9),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(24290), 선철주물 주조업(24311), 강주물 주조업(24312), 알루미늄주물 주조업(24321), 동주물 주조업(24322),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(24329)	중소기업 전용단지
E38 (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)	폐기물 수집운반업(381), 폐기물 처리업(382)	
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)	도금업(25922),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	
C26 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및 통신장비 제조업)	인쇄회로기판 제조업(26221),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(26222)	
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	고무·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(29292), 주형 및 금형 제조업(29294)	

※ 입주 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
 -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(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)
 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‘지정악취물질’

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(변경 없음)

○ 전, 답, 도로, 구거, 제방 등으로 이용

구분	계	전	답	도로	구거	제	비고
기정	면적(m ²)	523,035.0	178,215.0	298,552.0	24,380.0	12,900.0	8,988.0
	구성비(%)	100.0	34.1	57.1	4.6	2.5	1.7

8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 (변경)

용도지역	용도지역 세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	비고	
	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정	변경		
도시 지역	공업 지역	합 계	523,035	증) 1935.0	524,970.0	100.0	100.0	
		일반공업지역	449,518	증) 1,948.3	451,466.3	85.9	86.0	
		준공업지역	73,517	감) 13.3	73,503.7	14.1	14.0	

나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비 고		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		
총 계	523,035	증) 1,935.0	524,970.0	100.0	100.0			
산업시설용지	314,455	증) 45.2	314,500.2	60.0	59.9			
지원시설용지	12,817	감) 10.1	12,806.9	2.5	2.4			
공공 시설 용지	합 계	195,763	증) 1,899.9	197,662.9	37.5	37.7		
	공원, 녹지	소 계	91,298	증) 1,690.8	92,988.8	17.5	17.7	
		공 원	63,168	증) 523.3	63,691.3	12.1	12.1	5개소
		녹 지	28,130	증) 1,167.5	29,297.5	5.4	5.6	12개소
	공공공지	63	감) 63.0	-	0.1	-	-	
	하 천	32	증) 34.8	66.8	0.1	0.1	하천구역존치	
	저류시설	9,367	감) 5.3	9,361.7	1.8	1.8	1개소	
	폐수처리시설	2,000	감) 1.1	1,998.9	0.4	0.4	1개소	
	주 차 장	6,450	감) 0.9	6,449.1	1.2	1.2	3개소	
	빗물펌프장	(1,053)	감) 599.3	(453.7)	-	-	2개소→1개소	
도 로	86,553	증) 244.6	86,797.6	16.4	16.5			
구역외 시설용지	합 계	29,317	증) 48.9	29,365.9	-	-		
	하 천	149	감) 149.0	-	-	-		
	공 공 공 지	37	감) 37.0	-	-	-		
	도 로	25,218	증) 33.5	25,251.5	-	-		
	녹 지	3,780	증) 203.0	3,983.0	-	-		
	저류시설	133	감) 1.6	131.4	-	-		

다. 주요기반시설계획 (변경)

시 설 명	주요내용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도 로	22개 노선 (5,914m)	광로: 851m(2개노선) 중로: 4,589m(15개노선) 소로: 474m(5개노선)			
주 차 장	3개소	6,450	감) 0.9	6,449.1	
	계	63,168	증) 523.3	63,691.3	
공 원	1개소	10,009	감) 0.5	10,008.5	체육공원
	2개소	45,268	증) 496.2	45,764.2	근린공원
	2개소	7,891	증) 27.6	7,918.6	소공원
	계	31,910	증) 1,370.5	33,280.5	
녹 지	11개소	30,390	증) 1,127.4	31,517.4	완충녹지
	1개소	1,520	증) 243.1	1,763.1	경관녹지
공공공지	-	100	감) 100.0	-	-
하 천	-	181	감) 181.0	-	-
저류시설	1개소	9,500	감) 6.9	9,493.1	
빗물펌프장	2개소→1개소	1,053	감) 599.3	453.7	중복결정
폐수처리시설	1개소	2,000	감) 1.1	1,998.9	
가스공급설비	1개소	-	증)135.0	135.0	신설

※ 구역 외 시설 포함

1) 도로계획 (변경)

■ 도로 총괄표(구역내) (변경)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			
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			
합 계	기정	20	5,256	84,760.0	4	1,078	21,742.0	12	3,867	60,898.0	4	311	2,120.0			
	변경	20	5,256	85,694.9	4	1,078	22,299.7	12	3,867	61,226.2	4	311	2,169.0			
일반 도로	소계	기정	15	4,891	81,416.0	4	1,078	21,742.0	10	3,710	58,386.0	1	103	1,288.0		
		변경	15	4,891	82,332.7	4	1,078	22,299.7	10	3,710	58,709.5	1	103	1,323.5		
	광로	기정	1	622	5,036.0	-	-	-	1	622	5,036.0	-	-	-		
		변경	1	622	3,581.7	-	-	-	1	622	3,581.7	-	-	-		
	중로	기정	12	4,003	73,720.0	2	812	19,082.0	9	3,088	53,350.0	1	103	1,288.0		
		변경	12	4,003	75,911.7	2	812	19,460.4	9	3,088	55,127.8	1	103	1,323.5		
	소로	기정	2	266	2,660.0	2	266	2,660.0	-	-	-	-	-	-		
		변경	2	266	2,839.3	2	266	2,839.3	-	-	-	-	-	-		
	특수 도로	보행자 전용도로	소계	기정	5	365	3,344.0	-	-	-	2	157	2,512.0	3	208	832.0
			변경	5	365	3,362.2	-	-	-	2	157	2,516.7	3	208	845.5	
중로		기정	2	157	2,512.0	-	-	-	2	157	2,512.0	-	-	-		
		변경	2	157	2,516.7	-	-	-	2	157	2,516.7	-	-	-		
소로		기정	3	208	832.0	-	-	-	-	-	-	3	208	832.0		
		변경	3	208	845.5	-	-	-	-	-	-	3	208	845.5		

※ 가감속차로 등 기타 면적 : 기정) 1,793㎡ → 변경) 1,102.7㎡

■ 도로 총괄표(구역외) (변경)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	
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	
일반 도로	합계	기정	2	658	10,856.0	1	429	10,019.0	-	-	-	1	229	837.0
		변경	2	658	11,018.8	1	429	10,181.8	-	-	-	1	229	837.0
	광로	기정	1	229	837.0	-	-	-	-	-	-	1	229	837.0
		중로	기정	1	429	10,019.0	1	429	10,019.0	-	-	-	-	-
	변경	1	429	10,181.8	1	429	10,181.8	-	-	-	-	-	-	

※ 구역 외 도로(중로1-657호선) 법면사면 면적 미포함

◦ 도로 결정(변경)조서(구역내) (변경 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합계	20개 노선					5,256 (13,434)					
광로 소계	1개 노선					622 (8,800)					
기정	광로	2	5	50 (50~70)	주 간선도로	622 (8,800)	가정동 31호 광장	계양구 동측 구역계	일반 도로	86.9.29	대표 폭위 기재
중로 소계	14개 노선					4,160 (4,160)					
기정	중로	1	656	23.5	집산도로	659	서운동 123-57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02-14 일원 (중로1-657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1	658	23.5	국지도로	153	서운동 124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69-3 일원 (중로3-73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4	18.5	국지도로	888	서운동 116-18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2-19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5	18.5	국지도로	899	서운동 116-18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2-20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6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02-23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0-13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7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03-35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8-11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8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15-10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7-4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587	16	국지도로	194	서운동 115-9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4-1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0	16	국지도로	217	서운동 103-36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3-3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1	16	국지도로	240	서운동 102-36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3-22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2	16	국지도로	62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48-29 일원 (소로1-11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3	16	특수도로	83	서운동 100-11 일원 (중로2-854)	서운동 99-10 일원 (동측지구계변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4	16	특수도로	74	서운동 117-4 일원 (중로2-854)	서운동 121-1 일원 (동측지구계변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3	655	12.5	국지도로	103	서운동 115 일원 (중로2-587)	서운동 103-29 일원 (중로2-860)	일반 도로	15.2.9	
소로 소계	5개 노선					474 (474)					
기정	소로	1	1	10	국지도로	110	서운동 149-29 일원 (중로2-862)	서운동 152-2 일원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1	2	10	국지도로	156	서운동 149-61 일원 (중로2-862)	서운동 150-4 일원 (소로2-9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1	4	특수도로	51	서운동 123-5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7-15 일원 (중로2-854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2	4	특수도로	60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7-17 일원 (중로2-854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3	4	특수도로	97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4-10 일원 (중로2-855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
※ () : 전체 도로 폭원 및 연장

◦ 도로 결정(변경)조서(구역외) (변경 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합계	-	2개 노선				744 (16,689)					
기정	광로	3	9	40 (40~55)	주 간선도로	315 (16,260)	송림동 대 1-18	부천시계	일반 도로	76.78	대표 폭원 기제
기정	중로	1	657	23.5	보조 간선도로	429 (429)	병방동 243-2 일원 (광로3-9)	서운동 101-11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9	

※ () : 전체 도로 폭원 및 연장

2) 주차장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	-	6,450	감) 0.9	6,449.1		
변경	1	주차장	서운동 103-24 일원	3,300	증) 1.5	3,301.5	15.29	
변경	2	주차장	서운동 115 일원	1,650	증) 0.3	1,650.3	15.29	
변경	3	주차장	서운동 117-21 일원	1,500	감) 2.7	1,497.3	15.29	

3) 공원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(5개소)				-	63,168	증) 523.3	63,691.3		
변경	1	공원	체육공원	서운동 118-7 일원	10,009	감) 0.5	10,008.5	15.29	
변경	1	공원	근린공원	서운동 126-21 일원	24,999	증) 237.3	25,236.3	15.29	
변경	2	공원	근린공원	서운동 128-6 일원	20,269	증) 258.9	20,527.9	15.29	
변경	1	공원	소공원	서운동 103-23 일원	5,000	감) 0.5	4,999.5	15.29	
변경	2	공원	소공원	서운동 150-3 일원	2,891	증) 28.1	2,919.1	15.29	

4) 녹지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(12개소)				-	31,910.0	증) 1,370.5	33,280.5	산업단지 내 : 28,130.0m ² → 29,297.5m ² 산업단지 외 : 3,780.0m ² → 3,983.0m ²	
소 계(11개소)				-	30,390.0	증) 1,127.4	31,517.4	산업단지 내 : 26,610.0m ² → 27,534.4m ² 산업단지 외 : 3,780.0m ² → 3,983.0m ²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97-9 일원	4,156.0	증) 403.2	4,559.2	15.29 산업단지 내 : 1,877.0m ² → 2,112.8m ² 산업단지 외 : 2,279.0m ² → 2,446.4m ²	
변경	2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98-40 일원	2,065.0	증) 135.5	2,200.5	15.29 산업단지 내 : 682.0m ² → 757.3m ² 산업단지 외 : 1,383.0m ² → 1,443.2m ²	
변경	3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00-6 일원	2,886.0	증) 47.7	2,933.7	15.29	
변경	4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00-21 일원	4,355.0	증) 85.8	4,440.8	15.29	
변경	5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2 일원	3,824.0	증) 215.4	4,039.4	15.29 중복결정	
변경	6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9 일원	1,223.0	증) 157.8	1,380.8	15.29	
변경	7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8 일원	914.0	증) 139.2	1,053.2	15.29	
변경	8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6-9 일원	2,018.0	증) 247.2	2,265.2	15.29	
변경	9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6-2 일원	4,037.0	증) 182.8	4,219.8	15.29	
변경	10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51-10 일원	1,509.0	감) 202.7	1,306.3	15.29	
변경	11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52-1 일원	3,403.0	감) 284.5	3,118.5	15.29 산업단지 내 : 3,285.0m ² → 3,025.1m ² 산업단지 외 : 118.0m ² → 93.4m ²	
소 계(1개소)				-	1,520.0	증) 243.1	1,763.1		
변경	1	녹지	경관녹지	서운동 113 일원	1,520.0	증) 243.1	1,763.1	15.29	

5) 공공공지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공공공지	서운동 102-13	100	감) 100	-	15.29	-

6) 하천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기정	1	하천	지방2급 하천	용종동 61-1	굴포천 합류점	-	1.32	25~45	82,054	89.12.30	구역내 : 32㎡ 구역외 : 149㎡
변경	1	하천	지방2급 하천	용종동 61-1	굴포천 합류점	-	1.32	25~45	52,244	89.12.30	

※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-24호(2015.02.09.) 하천 면적 오기정정

- 기정 : 81,905㎡ ⇒ 52,244㎡

- 변경 : 82,054㎡ ⇒ 52,425㎡

※ 하천면적 변경 : 감) 181㎡, 일부 녹지로 변경

7) 유수지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유수지	저류시설	서운동 98-14 일원	9,500	감) 6.9	9,493.1	15.2.9	구역내 : 9,367㎡ → 9,361.7㎡ 구역외 : 133㎡ → 131.4㎡

8) 방수설비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		1,053	감) 599.3	453.7		
변경	1	방수설비 (빗물펌프장)	서운동 117-12 일원	453	증) 0.7	453.7	15.2.9	중복결정 (완충녹지5)
폐지	2	방수설비 (빗물펌프장)	서운동 152-1 일원	600	감) 600.0	-	15.2.9	-

9) 수질오염방지시설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시설	서운동 100-1 일원	2,000	감) 1.1	1,998.9	15.2.9	

10) 가스공급설비 (신설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	가스공급설비	서운동 102-20 일원	-	증) 135	135	-	

라. 전력: 한국전력공사의 인근변전소(임학, 신부평)에서 공급 예정

○ 사업지구 설비용량: 25,479KVA(사업지구 최대 전력부하량 : 19,412KW)

마. 에너지 공급계획: 인천도시가스(주)에서 공급 예정

바. 통신시설: 한국통신 계양지사에서 공급 예정

9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(변경)

가. 폐수종말처리시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시설	서운동 100-1 일원	2,000	감) 1.1	1,998.9	15.2.9	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 (변경 없음)

11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(변경)

가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)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

용도지역	용도지역 세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정	변경	
도시 지역	합	523,035	증) 1935.0	524,970.0	100.0	100.0	
	일반공업지역	449,518	증) 1,948.3	451,466.3	85.9	86.0	
	준공업지역	73,517	감) 13.3	73,503.7	14.1	14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용도지역		면 적(㎡)		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기정	변경	기 정	변 경	변경후		
-	일반공업 지역	일반공업 지역	449,518.0	증) 1,948.3	451,466.3	300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	준공업지역	준공업지역	73,517.0	감) 13.3	73,503.7	400	

2) 용도지구 결정조서 (변경 없음)

가) 보호지구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-	-	보호지구	중요시설물 보호지구	계양구 계산동의 19동 일원	524,970 (176,159.3)	인고제151호 (’94.9.10)	지구 전체 해당

3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1	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	523,035	증) 1,935.0	524,97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변경사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1	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	523,035	증) 1,935.0	524,970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나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
1) 교통시설 (변경)

가) 도로 (변경)

■ 도로 총괄표(구역내) (변경)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			
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			
합 계	기정	20	5,256	84,760.0	4	1,078	21,742.0	12	3,867	60,898.0	4	311	2,120.0			
	변경	20	5,256	85,694.9	4	1,078	22,299.7	12	3,867	61,226.2	4	311	2,169.0			
일반도로	소계	기정	15	4,891	81,416.0	4	1,078	21,742.0	10	3,710	58,386.0	1	103	1,288.0		
		변경	15	4,891	82,332.7	4	1,078	22,299.7	10	3,710	58,709.5	1	103	1,323.5		
	광로	기정	1	622	5,036.0	-	-	-	1	622	5,036.0	-	-	-		
		변경	1	622	3,581.7	-	-	-	1	622	3,581.7	-	-	-		
	중로	기정	12	4,003	73,720.0	2	812	19,082.0	9	3,088	53,350.0	1	103	1,288.0		
		변경	12	4,003	75,911.7	2	812	19,460.4	9	3,088	55,127.8	1	103	1,323.5		
	소로	기정	2	266	2,660.0	2	266	2,660.0	-	-	-	-	-	-		
		변경	2	266	2,839.3	2	266	2,839.3	-	-	-	-	-	-		
	특수도로	보행자전용도로	소계	기정	5	365	3,344.0	-	-	-	2	157	2,512.0	3	208	832.0
			변경	5	365	3,362.2	-	-	-	2	157	2,516.7	3	208	845.5	
중로		기정	2	157	2,512.0	-	-	-	2	157	2,512.0	-	-	-		
		변경	2	157	2,516.7	-	-	-	2	157	2,516.7	-	-	-		
소로		기정	3	208	832.0	-	-	-	-	-	-	3	208	832.0		
		변경	3	208	845.5	-	-	-	-	-	-	3	208	845.5		

※ 가감속차로 등 기타 면적 : 기정) 1,793㎡ → 변경) 1,102.7㎡

※ 금회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.

■ 도로 총괄표(구역외) (변경)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	
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	
일반도로	합계	기정	2	658	10,856.0	1	429	10,019.0	-	-	-	1	229	837.0
		변경	2	658	11,018.8	1	429	10,181.8	-	-	-	1	229	837.0
	광로	기정	1	229	837.0	-	-	-	-	-	-	1	229	837.0
		중로	기정	1	429	10,019.0	1	429	10,019.0	-	-	-	-	-
	변경	1	429	10,181.8	1	429	10,181.8	-	-	-	-	-	-	

※ 구역 외 도로(중로1-657호선) 법면사면 면적 미포함

※ 금회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.

◦ 도로 결정(변경)조서(구역내) (변경 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합계	20개 노선					5,256 (13,434)					
광로 소계	1개 노선					622 (8,800)					
기정	광로	2	5	50 (50~70)	주 간선도로	622 (8,800)	가정동 31호 광장	계양구 동측 구역계	일반 도로	86.9.29	대표 폭원 기재
중로 소계	14개 노선					4,160 (4,160)					
기정	중로	1	656	23.5	집산도로	659	서운동 123-57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02-14 일원 (중로1-657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1	658	23.5	국지도로	153	서운동 124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69-3 일원 (중로3-73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4	18.5	국지도로	888	서운동 116-18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2-19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5	18.5	국지도로	899	서운동 116-18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2-20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6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02-23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0-13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7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03-35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8-11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58	16	국지도로	196	서운동 115-10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7-4 일원 (중로2-854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587	16	국지도로	194	서운동 115-9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4-1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0	16	국지도로	217	서운동 103-36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13-3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1	16	국지도로	240	서운동 102-36 일원 (중로1-656)	서운동 103-22 일원 (중로2-855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2	16	국지도로	62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48-29 일원 (소로1-11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3	16	특수도로	83	서운동 100-11 일원 (중로2-854)	서운동 99-10 일원 (동측지구계변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2	864	16	특수도로	74	서운동 117-4 일원 (중로2-854)	서운동 121-1 일원 (동측지구계변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중로	3	655	12.5	국지도로	103	서운동 115 일원 (중로2-587)	서운동 103-29 일원 (중로2-860)	일반 도로	15.2.9	
소로 소계	5개 노선					474 (474)					
기정	소로	1	1	10	국지도로	110	서운동 149-29 일원 (중로2-862)	서운동 152-2 일원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1	2	10	국지도로	156	서운동 149-61 일원 (중로2-862)	서운동 150-4 일원 (소로2-96)	일반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1	4	특수도로	51	서운동 123-5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7-15 일원 (중로2-854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2	4	특수도로	60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7-17 일원 (중로2-854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기정	소로	3	3	4	특수도로	97	서운동 123-20 일원 (광로2-5)	서운동 114-10 일원 (중로2-855)	보행자 전용 도로	15.2.9	

※ () : 전체 도로 폭원 및 연장

◦ 도로 결정(변경)조서(구역외) (변경 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합계	-	2개 노선				744 (16,689)					
기정	광로	3	9	40 (40~55)	주 간선도로	315 (16,260)	송림동 대 1-18	부천시계	일반 도로	76.78	대표 폭원 기재
기정	중로	1	657	23.5	보조 간선도로	429 (429)	병방동 243-2 일원 (광로3-9)	서운동 101-11 일원 (중로1-656)	일반 도로	15.29	

※ () : 전체 도로 폭원 및 연장

나) 주차장 (변경)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	-	6,450	감) 0.9	6,449.1		
변경	1	주차장	서운동 103-24 일원	3,300	증) 1.5	3,301.5	15.2.9	
변경	2	주차장	서운동 115 일원	1,650	증) 0.3	1,650.3	15.2.9	
변경	3	주차장	서운동 117-21 일원	1,500	감) 2.7	1,497.3	15.2.9	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주차장	· 면적 변경 - 3,300.0m ² → 3,301.5m ² 증)1.5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2	주차장	· 면적 변경 - 1,650.0m ² → 1,650.3m ² 증)0.3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3	주차장	· 면적 변경 - 1,500.0m ² → 1,497.3m ² 감)2.7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2) 공간시설 (변경)

가) 공원 (변경)

■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(5개소)				-	63,168	증) 523.3	63,691.3		
변경	1	공원	체육공원	서운동 118-7 일원	10,009	감) 0.5	10,008.5	15.2.9	
변경	1	공원	근린공원	서운동 126-21 일원	24,999	증) 237.3	25,236.3	15.2.9	
변경	2	공원	근린공원	서운동 128-6 일원	20,269	증) 258.9	20,527.9	15.2.9	
변경	1	공원	소공원	서운동 103-23 일원	5,000	감) 0.5	4,999.5	15.2.9	
변경	2	공원	소공원	서운동 150-3 일원	2,891	증) 28.1	2,919.1	15.2.9	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체육공원	· 면적 변경 - 10,009.0m ² → 10,008.5m ² 감)0.5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1	근린공원	· 면적 변경 - 24,999.0m ² → 25,236.3m ² 증)237.3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2	근린공원	· 면적 변경 - 20,269.0m ² → 20,527.9m ² 증)258.9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1	소공원	· 면적 변경 - 5,000.0m ² → 4,999.5m ² 감)0.5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2	소공원	· 면적 변경 - 2,891.0m ² → 2,919.1m ² 증)28.1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나) 녹지 (변경)

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(12개소)				-	31,910.0	증) 1,370.5	33,280.5	산업단지 내 : 28,130.0m ² → 29,297.5m ² 산업단지 외 : 3,780.0m ² → 3,983.0m ²	
소 계(11개소)				-	30,390.0	증) 1,127.4	31,517.4	산업단지 내 : 26,610.0m ² → 27,534.4m ² 산업단지 외 : 3,780.0m ² → 3,983.0m ²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97-9 일원	4,156.0	증) 403.2	4,559.2	15.29 산업단지 내 : 1,877.0m ² → 2,112.8m ² 산업단지 외 : 2,279.0m ² → 2,446.4m ²	
변경	2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98-40 일원	2,065.0	증) 135.5	2,200.5	15.29 산업단지 내 : 682.0m ² → 757.3m ² 산업단지 외 : 1,383.0m ² → 1,443.2m ²	
변경	3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00-6 일원	2,886.0	증) 47.7	2,933.7	15.29	
변경	4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00-21 일원	4,355.0	증) 85.8	4,440.8	15.29	
변경	5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2 일원	3,824.0	증) 215.4	4,039.4	15.29 중복결정	
변경	6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9 일원	1,223.0	증) 157.8	1,380.8	15.29	
변경	7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7-18 일원	914.0	증) 139.2	1,053.2	15.29	
변경	8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6-9 일원	2,018.0	증) 247.2	2,265.2	15.29	
변경	9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16-2 일원	4,037.0	증) 182.8	4,219.8	15.29	
변경	10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51-10 일원	1,509.0	감) 202.7	1,306.3	15.29	
변경	11	녹지	완충녹지	서운동 152-1 일원	3,403.0	감) 284.5	3,118.5	15.29 산업단지 내 : 3,285.0m ² → 3,025.1m ² 산업단지 외 : 118.0m ² → 93.4m ²	
소 계(1개소)				-	1,520.0	증) 243.1	1,763.1		
변경	1	녹지	경관녹지	서운동 113 일원	1,520.0	증) 243.1	1,763.1	15.29	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4,156.0㎡ → 4,559.2㎡ 증)403.2㎡ (단지내:1,877.0㎡→2,112.8㎡, 단지외:2,279.0㎡→2,446.4㎡)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· 폐지되는 공공공지 완충녹지 포함
2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2,065.0㎡ → 2,200.5㎡ 증)135.5㎡ (단지내:682.0㎡→757.3㎡, 단지외:1,383.0㎡→1,443.2㎡)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3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2,886.0㎡ → 2,933.7㎡ 증)47.7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4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4,355.0㎡ → 4,440.8㎡ 증)85.8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5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3,824.0㎡ → 4,039.4㎡ 증)215.4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6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1,223.0㎡ → 1,380.8㎡ 증)157.8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7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914.0㎡ → 1,053.2㎡ 증)139.2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8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2,018.0㎡ → 2,265.2㎡ 증)247.2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9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4,037.0㎡ → 3,939.0㎡ 증)182.8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10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1,509.0㎡ → 1,306.3㎡ 감)202.7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11	완충녹지	· 면적 변경 - 3,403.0㎡ → 3,118.5㎡ 감)284.5㎡ (단지내:3,285.0㎡→3,025.1㎡, 단지외:118.0㎡→93.4㎡)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12	경관녹지	· 면적 변경 - 1,520.0㎡ → 1,763.1㎡ 증)243.1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다) 공공공지 (변경)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공공공지	서운동 102-13	100	감) 100	-	15.2.9	-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공공지	· 공공공지 폐지 - 100㎡ → 0㎡ 감)100㎡	· 산업단지 상징조형물 미설치에 따른 시설 폐지

3) 방재시설 (변경)

가) 하천 (변경)

■ 하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기정	1	하천	지방2급 하천	용종동 61-1	굴포천 합류점	-	1.32	25~45	82,054	89.12.30	구역내 : 32㎡ 구역외 : 149㎡
변경	1	하천	지방2급 하천	용종동 61-1	굴포천 합류점	-	1.32	25~45	52,244	89.12.30	

※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-24호(2015.02.09.) 하천 면적 오기정정

- 기정 : 81,905㎡ ⇒ 52,244㎡

- 변경 : 82,054㎡ ⇒ 52,425㎡

※ 하천면적 변경 : 감)181㎡, 일부 녹지로 변경

■ 하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하천	· 오기정정 - 기정 : 81,905㎡ ⇒ 52,244㎡ - 변경 : 82,054㎡ ⇒ 52,425㎡ · 하천면적 변경 : 감)181㎡	· 하천면적 오기정정 및 기존 하천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도시계획시설(하천) 정비

나) 유수지 (변경)

■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유수지	저류시설	서운동 98-14 일원	9,500	감) 6.9	9,493.1	15.2.9	구역내 : 9,367㎡ → 9,361.7㎡ 구역외 : 133㎡ → 131.4㎡

■ 유수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유수지	· 면적 변경 - 9,500.0㎡ → 9,493.1㎡ 감)6.9㎡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다) 방수설비 (변경)

■ 방수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		1,053	감) 599.3	453.7		
변경	1	방수설비 (빗물펌프장)	서운동 117-12 일원	453	증) 0.7	453.7	15.2.9	중복결정 (완충녹지5)
폐지	2	방수설비 (빗물펌프장)	서운동 152-1 일원	600	감) 600.0	-	15.2.9	-

■ 방수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방수설비	· 면적 변경 - 453.0m ² → 453.7m ² 증)0.7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2	방수설비	· 빗물펌프장 폐지 - 600.0m ² → 0m ² 감)600m ²	· 산업단지구역 밖으로 위치 변경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

4) 환경기초시설 (변경)

가) 수질오염방지시설 (변경)

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시설	서운동 100-1 일원	2,000	감) 1.1	1,998.9	15.2.9	

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수질오염 방지시설	· 면적 변경 - 2,000.0m ² → 1,998.9m ² 감)1.1m ²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5) 유통 및 공급시설 (신설)

가) 가스공급설비 (변경)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	가스공급설비	서운동 102-20 일원	-	증) 135	135	-	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가스공급설비	· 신설 - 0㎡ → 85㎡ 증) 85㎡	·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업체 민원에 따른 가스공급설비 신설(공장가동에 필요한 시설)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1	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	523,035	증) 1,935.0	524,97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변경사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1	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	523,035	증) 1,935.0	524,970	·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(변경)

가) 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·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

: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

나)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

: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

3)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(변경)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)

① 산업시설용지 (변경)

도 면 번 호	가구 번호		면 적(㎡)			획 지				비 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기 정		변 경		
						위 치	면적(㎡)	위 치	면적(㎡)	
합 계			314,455.0	증) 45.2	314,500.2	-	-	-	314,500.2	
산 업	산업Ⅰ-1	산업Ⅰ	91,066.0	증) 2.4	91,068.4	-	-	-1	26,400.0	· 최소 획지 : 1,650㎡ · 최대 획지 : 제한없음 · 산업Ⅲ-2 획지(가스 공급 설비 포함)
						-	-	-2	18,469.7	
						-	-	-3	6,603.1	
						-	-	-4	4,949.5	
						-	-	-5	4,949.7	
						-	-	-6	4,949.6	
						-	-	-7	4,949.1	
						-	-	-8	4,948.9	
						-	-	-9	4,949.6	
						-	-	-10	9,899.2	
	산업Ⅰ-2		9,600.0	감) 0.8	9,599.2	-	-	-11	9,599.2	
	산업Ⅱ	산업Ⅱ	18,147.0	증) 2.3	18,149.3	-	-	-1	4,952.6	
						-	-	-2	6,597.6	
						-	-	-3	6,599.1	
	산업Ⅲ	산업Ⅲ	16,500.0	감) 2.0	16,498.0	-	-	-1	9,898.1	
						-	-	-2	6,599.9	
	산업Ⅳ	산업Ⅳ	20,008.0	증) 6.3	20,014.3	-	-	-1	6,603.5	
						-	-	-2	3,301.4	
						-	-	-3	3,404.3	
						-	-	-4	1,752.7	
						-	-	-5	1,651.6	
						-	-	-6	3,300.8	
	산업Ⅴ	산업Ⅴ	23,401.0	증) 2.2	23,403.2	-	-	-1	2,044.2	
-						-	-2	1,650.2		
-						-	-3	16,500.1		
-						-	-4	3,208.7		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기 정		변 경		
					위 치	면적(m ²)	위 치	면적(m ²)	
산업	산업⑥	20,008.0	감) 0.8	20,008.8	-	-	-1	9,895.3	· 최소 획 지 : 1,650 m ² · 최대 획 지 : 제한없음
					-	-	-2	1,650.1	
					-	-	-3	1,649.6	
					-	-	-4	1,755.2	
					-	-	-5	1,755.5	
					-	-	-6	1,651.2	
					-	-	-7	1,651.9	
	산업⑦	13,853.0	증) 2.0	13,855.0	-	-	-1	3,045.4	
					-	-	-2	3,298.7	
					-	-	-3	1,649.9	
					-	-	-4	1,650.4	
					-	-	-5	1,650.2	
					-	-	-6	2,560.4	
	산업⑧	9,906.0	증) 2.3	9,908.3	-	-	-1	1,650.2	
					-	-	-2	1,650.1	
					-	-	-3	1,653.9	
					-	-	-4	1,654.0	
					-	-	-5	3,300.1	
	산업⑨	18,779.0	감) 1.1	18,777.9	-	-	-1	3,032.8	
					-	-	-2	1,650.2	
					-	-	-3	4,949.6	
					-	-	-4	4,949.7	
					-	-	-5	1,649.7	
					-	-	-6	2,545.9	
	산업⑩	20,008.0	감) 0.5	20,007.5	-	-	-1	3,301.3	
					-	-	-2	1,650.2	
					-	-	-3	1,649.9	
					-	-	-4	3,404.1	
					-	-	-5	3,403.5	
					-	-	-6	1,649.7	
					-	-	-7	1,649.6	
					-	-	-8	3,299.2	
	산업⑪	13,484.0	증) 7.3	13,491.3	-	-	-1	13,491.3	
	산업⑫	4,834.0	감) 1.0	4,833.0	-	-	-1	4,833.0	
	산업⑬	12,879.0	감) 10.3	12,868.7	-	-	-1	2,979.0	
					-	-	-2	1,648.7	
-					-	-3	4,945.1		
-					-	-4	3,295.9		
산업⑭	8,070.0	감) 3.6	8,066.4	-	-	-1	4,947.6		
				-	-	-2	3,118.8		
산업⑮	4,950.0	증) 8.0	4,958.0	-	-	-1	4,958.0		
산업⑯	8,962.0	증) 30.9	8,992.9	-	-	-1	2,412.3		
				-	-	-2	3,276.8		
				-	-	-3	3,303.8		

② 지원시설용지 (변경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 고
					기 정		변 경	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적(m ²)	위 치	면적(m ²)	
합 계		12,817.0	감) 10.1	12,806.9	-	-	-	12,806.9	
지원	지원①	4,170.0	감) 4.6	4,165.4	-	-	-1	1,067.0	
					-	-	-2	1,005.4	
					-	-	-3	1,026.7	
					-	-	-4	1,066.3	
	지원②	5,187.0	감) 2.5	5,184.5	-	-	-1	5,184.5	
	지원③	3,460.0	감) 3.0	3,457.0	-	-	-1	3,457.0	

③ 주차장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 고
					기 정		변 경	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적(m ²)	위 치	면적(m ²)	
합 계		6,4500.0	감) 0.9	6,449.1	-	-	-	6,449.1	
주	주1	3,300.0	증) 1.5	3,301.5	-	-	-1	3,301.5	
	주2	1,650.0	증) 0.3	1,650.3	-	-	-1	1,650.3	
	주3	1,500.0	감) 2.7	1,497.3	-	-	-1	1,497.3	

나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① 산업시설용지 (변경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산업	산업 ①-1~10 산업② 산업③ 산업④ 산업⑤ 산업⑦ 산업⑨ 산업⑩ 산업⑪ 산업⑫ 산업⑭ 산업⑮ 산업⑯	용 도	허용 용도	· 공장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에 의한 공장	
			불허 용도	기 정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의 공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 제4항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
				변 경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의 공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 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※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
		건폐율	· 70% 이하		
		용적률	· 300% 이하		
		높 이	· 5층 이하		
		배 치	·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		
		형 태	기 정	·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(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%이상 옥상 녹화,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) · 불연재 사용 권장	
			변 경	·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(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%이상 옥상 녹화,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) · 불연재 사용 권장 ·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, 무피복철골조, 컨테이너,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. (단,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.)	
		색 채	·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· ‘첨부1.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’중 산업시설의 색채 적용		
건축선	-			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산업	산업⑥ 산업⑧ 산업⑬ ※ 중소기업 전용단지 (복합업종)	용 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장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에 의한 공장 · 재활용시설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에 의한 재활용시설. 단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시설·장치·장비·설비에 한함. 	
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의 공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9조 제4항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	
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의 공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 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※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 	
		건폐율	· 70% 이하		
		용적률	· 300% 이하		
		높 이	· 5층 이하		
		배 치	·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		
		기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(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%이상 옥상 녹화,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) · 불연재 사용 권장 		
		형 태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(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%이상 옥상 녹화,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) · 불연재 사용 권장 ·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, 무피복철골조, 컨테이너,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. (단,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.) 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· ‘첨부1.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’중 산업시설의 색채 적용 		
건축선	-				

■ 입주 제한 업종

중분류	입주 제한 업종	비고
C10 (식료품 제조업)	도축업(10110),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(10800),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21)	중소기 업전용 단지
C16 (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)	목재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(16103)	
C23 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	시멘트 제조업(23311), 바내화 모르타르 제조업(23321), 레미콘 제조업(23322), 콘크리트타일·기와·벽돌 및 블록 제조업(23325),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(23326), 그외 기타 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(23329), 아스콘 제조업(23991),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999)	
C24 (1차 금속 제조업)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(24191),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1),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2), 연 및 아연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3), 기타 비철금속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(24219), 동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1), 알루미늄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2), 기타 비철금속 압연·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9),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(24290), 선철주물 주조업(24311), 강주물 주조업(24312), 알루미늄주물 주조업(24321), 동주물 주조업(24322),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(24329)	
E38 (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)	폐기물 수집운반업(381), 폐기물 처리업(382)	
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)	도금업(25922),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	
C26 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및 통신장비 제조업)	인쇄회로기판 제조업(26221),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(26222)	
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	고무·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(29292), 주형 및 금형 제조업(29294)	

※ 입주 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
 -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(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)
 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‘지정악취물질’

② 지원시설용지 (변경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지원 지원 지원	지원① 지원② 지원③	용 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종 근린생활시설 ·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·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 ·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· 의료시설(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· 교육연구시설 · 노유자시설 · 운동시설(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· 업무시설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함) · 자동차 관련시설(세차장, 주차장, 정비공장에 한함) 	
				불허 용도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9조 제4항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 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※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
		건폐율	· 70% 이하		
		용적률	· 400% 이하		
		높이	· 6층 이하	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전면방향 -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방향 	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(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%이상 옥상 녹화) ·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·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	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· ‘첨부1.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’중 산업시설의 색채 적용 	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,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- 폭 15m 이상 도로변 : 2m - 폭 15m 미만 도로변 : 1m 		

③ 주차장 (변경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주 주 ① 주 ② 주 ③		용 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외주차장 -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-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[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),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에 한함)] 포함 ※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% 이내(단,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연면적의 20% 이내)
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·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운동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9조 제4항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
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·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운동장 ·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 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※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 	
		건폐율	· 80% 이하	
		용적률	· 400% 이하	
		높이	· 5층 이하	
		배 치	·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· ‘첨부1.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’중 산업시설의 색채 적용 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,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- 폭 15m 이상 도로변 : 2m - 폭 15m 미만 도로변 : 1m 	

다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① 산업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산업	산업 1~16	담장	·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.2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. 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은 제외
		차량의 진출입	·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,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
		주차장 설치기준	·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
		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	· 차량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(경보장치, 신호등 등)을 설치하여야 함

② 지원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지원	지원 1~3	담장	· 지원시설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
		대지내 공지	· 대지내 공지에 관한 기준 제시 - ‘첨부5.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’참조
		차량의 진출입	·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‘차량출입 불허구간’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도로의 각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. 단,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(또는 건축허가권자)의 승인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
		주차장 설치기준	·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
		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	· 차량 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(경보장치, 신호등 등) 설치

③ 주차장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주	주 ①~③	차량의 진출입	·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'차량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
		보행자 동선	·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, 인접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권장
		조경	· 주차공간과 차량서비스공간의 입지에 따라 불량한 경관 및 소음이 예상되는 경계부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인접단지와의 차폐를 도모한다.

④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

구분	계 획 내 용
건축물의 색채	·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기준 제시 - '첨부1.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' 참조
가로경관	· 가로경관에 관한 기준 제시 - '첨부2.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' 참조
공원·녹지계획	· 공원·녹지계획에 관한 기준 제시 - '첨부3. 공원·녹지계획에 관한 사항' 참조
옥외광고물	·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 - '첨부4.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' 참조

4)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 그 밖의 계획내용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결정도서 참조: 게재생략

첨부1.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

1. 기본방향

- 상위계획인 「2025 인천도시기본계획」 및 「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」, 「인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, 2010」, 「인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, 2010」을 반영한 색채가이드라인 계획
-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내 공업규격(KS)으로 제정되어 있으며, 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(Munsell)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용도 및 블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.
- 민간 창의성 및 융통성 발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의 권장사항으로 반영하며 사업계획 심의 시 또는 별도 색채계획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- “주조색”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분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- “보조색”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3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- “강조색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
3. 산업시설의 색채

색채가이드라인				권장색채			권장 코디네이션
색채구분	명도	채도	색상				
주조색	7.0~9.5	3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	2.5G 9.1/0.8	5.7G 7.9/1.6	8.3G 7.9/1.0	
				3.4G 9.0/0.8	4.1G 9.1/0.9	6.6G 7.7/0.5	
				1.4GY 9.3/2.1	5GY 9.1/1.0	9.3Y 8.9/2.5	
보조색	6.0~9.0	4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	3.6Y 8.0/1.8	0.3Y 6.2/1.6	9.6G 6.3/2.5	
				8.3G 7.9/1.0	3.7G 7.7/0.9	4.6B 6.0/2.3	
				4.6B 6.0/2.3	5.5G 6.4/0.8	8.3B 6.2/1.0	
강조색	3.0~7.0	5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	4.8B 5.0/2.1	4.3B 3.6/1.3	4.7B 4.6/0.7	
				2.3Y 4.6/1.7	1.4G 4.6/1.8	7.8BG 3.6/2.3	
				9.8B 5.1/1.3	7.5YR 5.0/2.5	2.4PB 3.5/4.1	
지 붕	2.0~5.0	5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	7YR 3.6/2	1YR 2/2	7R 4/7	
				7GY 3.5/3.4	8Y 2/2	9GY 4/8	
				4B 3.5/2	3BG 2/2.5	4BG 4/6	

4. 지원시설 및 기타시설의 색채

색채가이드라인				권장색채	권장 코디네이션	
색채구분	명도	채도	색상			
주조색	7.0~9.5	4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, P, RP	2.5G 9.1/0.8	4.1G 9.1/0.9	8.3G 7.9/1.0
				4.9GY 9.1/1.0	9.3Y 8.9/2.5	8.7Y 8.2/3.0
				1.4GY 9.3/2.1	6.9Y 9.1/1.9	4.2Y 7.4/4.3
보조색	5.0~9.0	4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, P, RP	3.6Y 8.0/1.8	0.3Y 6.2/1.6	9.0YR 6.3/2.8
				2.3Y 5.4/4.4	4.2Y 6.8/3.8	0.8Y 5.4/1.4
				4.6B 6.0/2.3	5.5G 6.4/0.8	8.3B 6.2/1.0
강조색	3.0~7.0	5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, P, RP	9.8B 5.1/1.3	4.8B 5.0/2.1	4.3B 3.6/1.3
				2.3Y 4.6/1.7	7.5YR 5.0/2.5	3.8R 4.7/0.8
				6.1YR 6.1/5.9	6.7YR 3.2/3.6	7.8YR 3.4/3.0
지 붕	2.0~5.0	5.0 이하	N, R, YR, GY, G, BG, B, PB, P, RP	7YR 3.6/2	1YR 2/2	7R 4/7
				7GY 3.5/3.4	8Y 2/2	9GY 4/8
				4B 3.5/2	3BG 2/2.5	4BG 4/6

첨부2.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

1. 가로수종의 선정

-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되,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계절성이 풍부하며 토양, 기후 등 생태적 조건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.
 - 이식이 용이하고, 성장속도가 빨라 전정에 잘 견디며,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한다.
 -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.
- 가로수 식재시 수고 4m, 흉고 직경 6cm이상인 수목을 식재한다.
- 장식화단에는 가로별 계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한다.

2. 가로수 식재방법

-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6-8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, 가로등과 교통안내표지판,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.
- 간선도로의 교차부분,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.
-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경우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
- 가로수의 관리 등 기타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3. 가로포장

- 일반구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, 가로수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.
-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 등을 설치한다.
-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.

4.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

- 기본원칙
 - 대중교통 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,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 - 자전거보관대는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위치, 규모, 배치형태를 준수

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
○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

-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,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,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.

○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

-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간선도로의 자전거 횡단구간에는 자전거 형태를 도식하여야 하며, 자전거도로와 차도와의 경계부에는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.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

○ 교차접속부 처리

-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.
-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,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도로의 험프의 경사는 5~10%로 설정하며, 10cm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.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,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블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○ 버스정차대

- 정차대는 교차로, 횡단보도,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첨부3. 공원·녹지계획에 관한 사항

1. 공원에 관한 사항

○ 공원조성 원칙

- 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야 한다.
- 보행통로,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,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.
-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결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.
-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 부여한다.

○ 공원 내 도입시설

- 인접 주거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운동시설,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,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 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2. 녹지에 관한 사항

○ 녹지 내 식재원칙

-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,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, 녹지의 폭과 녹지 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.
-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, 매연,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 측으로부터 관목 밀식,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,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.

○ 녹지내 도입시설

- 완충녹지는 소음,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.
-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, 인접한 보도 등과 연계하여 벤치, 파고라, 조명등,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.
- 완충녹지 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8조의 녹화면적률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첨부4.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
1. 기본원칙

-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「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2.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

-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2층 이하에 설치하며, 3층 이상은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- 동일 층의 가로형 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,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.
-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.
- 가로형 광고물의 가로는 외벽면의 창호 좌우측 끝선 이내로 하며, 높이는 1미터 이하로 하며,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

3. 돌출간판의 표시방법

-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업소는 돌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
-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,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그 광고물은 상·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,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 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, 다른 벽면에는 돌출형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.
- 광고물의 바깥쪽 끝 부분은 면으로부터 1.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
-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 폭·두께·가로 폭을 동일 크기로 설치한다.

4.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

- 건물 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(종합안내판)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.
-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.5미터, 1면의 면적(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)은 3제곱미터, 광고물 면적의 합계는 12제곱미터 이내로 한다.

5.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

-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미터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.

- 1층 입주 점포에 한하여 1개설치가 가능하며, 광고물 설치 총량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재료는 투시가 가능한 재료(반투명 등)를 사용하며,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6.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

- 광고물의 휘도(광원의 밝기)는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한다.
- 조명 광원의 설치하는 광고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과 외부에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.
-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발광조명(네온사인, 점멸방식)은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. 단,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
-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권장한다.

7. 허가 및 신고절차 등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 지침에서“광고물 등”이라 한다)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,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8. 광고물 등의 추가 표시방법

-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첨부5.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

1. 용어의 정의

- “전면공지”라 함은 건축한계선,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·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.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.
 - “보도 연결형 전면공지”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.
 - “차도 연결형 전면공지”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.
- “공개공지”라 함은 「건축법」 제43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.

2.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.

-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
 - 전면공지에는 ‘보행지장물’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경계부 처리
 -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(보도가 없을 경우)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.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·정차를 금지한다. 다만,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.
 -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
- 포장
 -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.

3. “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은 「인천광역시 건축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, 다음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.

- 공개공지의 배치
 -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.
 - ▶ 교차로 각각부(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각각부에 배치)
 - ▶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
 - ▶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

-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.
 -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,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공개공지 조성기준
-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,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공개공지면적의 30% 이상을 「건축법」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. 단, 피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는 식재된 면적으로 본다.
 -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4m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.
 -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,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,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2.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(변경) (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)

가. 지형도면 작성 조서 (변경)

지역·지구 등 명칭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	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-19번지 일원	523,035	증)1,935	524,970	

나.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: 게재생략

1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02-20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
- 명칭: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케이에스피스틸 압축가스 저장소 설치공사

다. 면적 또는 규모: 면적 135m²

라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 대표이사 최창은
- 주소: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442번길 57-10(삼정동)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
- 준공예정일: 2019년 12월 31일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비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계							
1	계양구 서운동	(산업3-2)	공장	(6,599.9)	135	(주)케이에스피스틸	

아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 없음

14. 관계도서의 열람: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 열람장소에 갖추어 두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- 관련도서: 『별첨』 (게재생략)
- 열람장소: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(전화 : 440-4673)
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개발사업단 (전화 : 450-5712)

※ 별첨 (게재 생략)

- ① 위 치 도 (변경없음)
- ② 용도지역 계획(변경)도
- ③ 토지이용계획(변경)도
- ④ 유치업종 배치계획(변경)도
- ⑤ 기반시설계획(변경)도
- ⑥ 용수공급계통 결정도 (변경없음)
- ⑦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- ⑧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- 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- ⑩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- ⑪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- ⑫ 지형도면 고시도 (변경)